

## 항계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고찰

† 이현성 · 윤대근\*

†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

### Consideration of Operating Yacht in Harbor limit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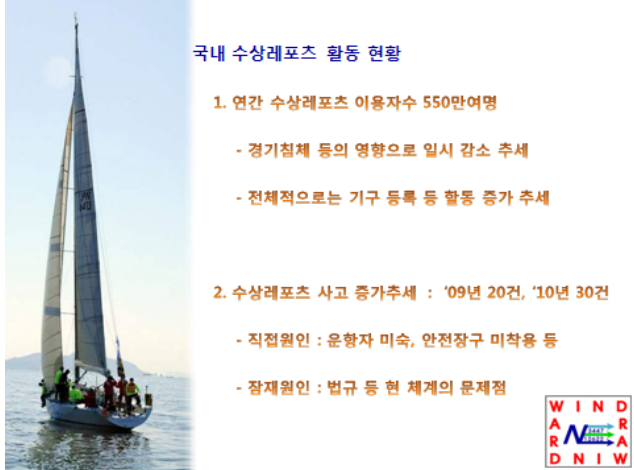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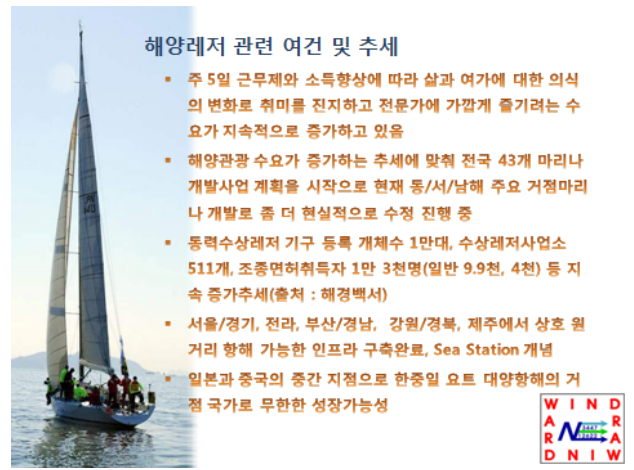
† Hyun-Sung Lee · Dae-kuen Yoon \*

† Graduate school of National Mokpo Maritime University, Mokpo 530-729, Korea

\*Department of Global Logistics System, National Mokpo Maritime University, Mokpo 530-729, Korea

**요 약 :** 레저 활동의 범위가 점차 해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요트, 카약,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운항의 증가는 괄목상대 할 만 한 상황이지만, 항계 내에 위치한 마리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는 개항질서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의해 활동금지 또는 상당한 제약 속에서 음성적이며, 변형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조차 단순 제재이외의 대안모색에 대한 활동이 미비한 가운데 안전한 해양레포츠 발전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연구와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핵심용어 :** 요트, 마리나, 수상레저기구, 항계, 개항질서법, 수상레저금지구역





### 요트운항에 따른 주요 체크포인트

1. 관계 법령 : 개항질서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 가. 개항질서법

- 제 2조(개항 및 항계) 제 3조에 따른 개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산항 2.인천항 3.필택/당진항 4.마산항 ~ 16.목포항  
17.완도항 18.여수항 21.제주항 25.보령항 26. 서귀포항 등 총 29개 항 선정
- 제 13조(범선의 항행 제한) 범선은 항계 안에서 항로를 지그재그로 항행해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속력 등의 제한) ② 범선이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 요트운항... 그 불편한 진실

#### 나.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증 취득 시 해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의 출제빈도 낮음
- 요트가 영업구역(1Nm x 1Nm)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현실  
\*\* 호숫가 오리보트 사업 수준의 생각  
\*\* 영업구역 이탈이 불가피한 현실  
\*\* 유사시 책임은 고스란히 사업자  
\*\* 택시 - 렌터카 - 마이카 절차 없이 동력수상레저산업 성공 안됨

#### 다. 기타

- 수상레저기구는 기존 상선, 어선 종사자 및 해양관련 행정 담당자들에게는 눈에 가시



- 시행규칙 제12조(무선설비의 종류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할 무선설비의 종류는 초단파 무선전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15개 채널) 해상교통관제용 주파수를 송신 및 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선설비 강제 설치 선박

- \* 예선(曳船)
- \* 예인선(曳引船)과 부선(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艇)은 제외한다)
-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 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메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 요트운항... 그 불편한 진실

#### 가. 개항질서법

- 항계 내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받기 - 일반사업자 불가 수준  
\*\* 불법 영업행위 조장  
\*\* 허가사업자 외 관리감독 소홀 - 안전사고 위험 증가
- 목포항의 경우 개항으로 항계를 벗어나기 위해 마리나에서 출발하여 1시간 동안 엔진 항해 해야 함  
\*\* 실질적인 해양레저활동 수익은 항계 내에 존재함
- 외국선박과 마주했을 때 VHF 송/수신기가 없어 교신불가 기구 다수  
교신이 이루어져도 외국선박 조우시 해상영어 사용 불가로 교신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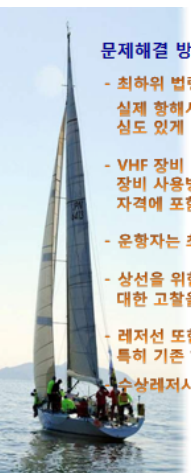
####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 5조 필기시험 - 별표 1의 2.  
「수상레저안전법」 「개항질서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전파법」 - 수상레저안전법을 주로 다름

#### 제 13조 영업구역

시행규칙 제30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 5.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최하위 법령인 수상레저안전법 외에 해사안전법, 개항질서법 등의 실제 항해시 필요한 법규에 대한 부분이 면허증 취득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져야 함.
- VHF 장비 설치에 관하여 정부보조금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강제화 하고 장비 사용방법(공용채널, 지역별 채널 공지)에 대해 반드시 강의하고 자격에 포함해야함.
- 운항자는 최소한 국제신호기, 기본 해상영어에 대한 이해 요망
- 상선을 위한 항계의 확장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레저선 특히 요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령의 개정 및 예외 규정 등을 현실적 운용
- 레저선 또한 해상교통수단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며, 특히 기존 해양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현실적 써포트 절실(행정)



## 결언

국내 해양레포츠 및 마리나산업의 성장과 운항요트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법규의 현실적인 개정 검토가 시급하며, 실제 산업화 되어 정착될 수 있는 정책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운항자 또는 수상레저사업자들의 해상교통안전 관련 지식의 향상과 올바른 해양문화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최선의 길이고

이는 반드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정부와 사업자와 사용자 3자간의 끊임없는 발전적 실천이 필요한 사안이다.

